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제,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목적

00요양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②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3. 계약해제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③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다.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통지를 받은 날 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④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본인부담금 :

- ㉓ 1등급 ~ 4등급의 일반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20%를 부담한다.
- ㉔ 1등급 ~ 4등급의 의료급여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10%를 부담한다.
- ㉕ 1등급 ~ 4등급의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면제된다.
- ㉖ 등급 외의 자는 다음과 같은 ADL평가점수와 하세가와 평가기준에 의거 입소 비용을 차등부과 한다.

ADL 평가점수	하세가와평가지표	차등 입소비용
1-30	3	30,000원(1일기준)
31-70	2	35,000원(1일기준)
71-90	1	40,000원(1일기준)

【등급별 일일 이용료 산정표】

(2018.1.1.기준)

노인요양시설									
등급	외박	1일		28일		30일		31일	
1등급	32,590	65,190	13,030	1,825,320	365,060	1,955,700	391,140	2,020,890	404,170
1등급(경)			6,510		182,530		195,570		202,080
2등급	30,240	60,490	12,090	1,693,720	338,740	1,814,700	362,940	1,875,190	375,030
2등급(경)			6,040		169,370		181,470		187,510
3등급	27,890	55,780	11,150	1,561,840	312,360	1,673,400	334,680	1,729,180	345,830
3등급(경)			5,570		156,180		167,340		172,91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급	외박	1일		28일		30일		31일	
1등급	28,480	56,960	11,390	1,594,880	318,970	1,708,800	341,760	1,765,760	353,150
1등급(경)			5,690		159,480		170,880		176,570
2등급	26,425	52,850	10,570	1,479,800	295,960	1,585,500	317,100	1,638,350	327,670
2등급(경)			5,280		147,980		158,550		163,830
3등급	24,360	48,720	9,740	1,364,160	272,830	1,461,600	292,320	1,510,320	302,060
3등급(경)			4,870		136,410		146,160		151,030

②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

- 1) 식사재료비 : (1일(3식) 7,000원 × 30일 = 210,000원)
- 2) 이·미용비, 상급침실 이용료는 시설에서 부담하나,
개인 간식 등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 3)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담한다.
- 4) 특별보호시 발생하는 별도의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